

아이들에겐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올바른 실행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향과 과제

2008년 7월 9일(수) 14:00-18:00 경기도의회 세미나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 초대의 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올바른 실행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향과 과제”토론회

2008년 3월 18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4년 3월 30일 경기도민 166,024명이 최초의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0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경기도조례 제 3358호)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 사용’이라는 표현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우리 도민들의 바램과 염원이 실현되지 못한 채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활동을 통해 비록 문구를 조정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17만 경기도민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실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아는 여러분을 모시고 또 다른 출발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 1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 토론회 순서

1부 : 사전 행사(15:00~15:20)	
사회 : 최낙성 공동집행위원장	
1. 내외빈과 참석자 소개	사회자
2. 인사말	구희현 상임대표
3. 경과보고	최한상 공동집행위원장

휴 식 (15:20~15:30)

2부 : 발제 및 토론(15:30~17:00)	
사회 : 김현곤 공동집행위원장	
1.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의미와 향후 방향 및 과제 _____ 15쪽	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박 미 진
2.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경기도의 현황과 과제 _____ 31쪽	경기도 교육협력과장 김 용 연
3. 친환경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방안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방안 _____ 37쪽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이 진 찬
4. 학교급식 식재료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과 과제 _____ 47쪽	경기도교육청 급식담당사무관 이 경 익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17:30~18:00)

■ 경과보고

[2003년]

- 2003년 3월 서울 경기지역에서 학생 1500여명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 2003년 6월 경기인천지역 학교급식 위탁업체 비리 사건 발생
학교장, 행정실장, 급식업자등 28명 고발
- 2003년 7월 8일 학교급식의 발전적 전망' 관련 전농 경기도연맹 주최 심포지엄 개최
- 2003년 7월 15일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운동을 합시다'라는 명의로
교육,환경,노동,종교,농업등 관련 단체에 간담회 제안 (박미진 의원)
- 2003년 7월 18일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담당자 1차 간담회 개최.
- 2003년 7월 31일 기획팀 1차 회의와 경기도운동본부 준비위 발족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담당자 2차 간담회 개최
- 2003년 8월 7일 조례제정운동의 취지와 운동본부 참가를 요청하는 2차 제안문 발송
- 2003년 8월 22일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준)
제1차 집행위원회
- 2003년 9월 16일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준)
제2차 집행위원회
- 2003년 9월 16일-24일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대상 경기도 운동본부 설문조사 실시
(학부모 1, 077명/학생 1,784명)
- 2003년 9월 26일 기획팀 7차 회의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준)
제3차 집행위원회
- 2003년 10월 1일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1차 대표자 회의
- 2003년 10월 15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1차(통합4차)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 2003년 10월 24일 조례청원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대표자 : 구희현)
경기도운동본부 제1차 시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 2003년 11월 3일 학교급식개선이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제2차(통합5차) 집행위원회 개최
- 2003년 11월 4일 여주군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
- 2003년 11월 10일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발대식 개최
및 1차 서명운동 시작(수원역)
- 2003년 11월 11일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전국 운동본부 발족식
- 2003년 12월 10일 경기도운동본부 제2차 시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2003년 12월 29일 구리시운동본부 구리시 급식 조례안 청구인 접수
-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공포

[2004년]

- 2004년 1월 7일 경기도운동본부 기획팀 회의 개최
경기도운동본부 제3차 시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2004년 1월 13일 남양주시 운동본부 급식 조례안 청구인 접수
- 2004년 1월 28일 안산시운동본부 급식조례안 청구인 접수
- 2004년 1월 30일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제2차 전체 대표자회의
- 2004년 2월 3일 안양시운동본부 급식조례안 청구인 접수
운동본부 기획팀 회의 (조례안 토론 및 안 확정)
- 2004년 2월 5일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공청회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2004년 2월 6일 의왕시운동본부 급식조례 청구인 접수
- 2004년 3월 5일-6일 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 수련회 (김포)
- 2004년 3월 22일 급식운동본부 3차 대표자회의
- 2004년 3월 26일 평택운동본부 평택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청구인 접수
- 2004년 3월 24일 경기도청 사업담당자 간담회 진행
- 2004년 3월 30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인 접수 및 기자회견
- 2004년 4월 9일 총선 후보자 학교급식법 지정 공개 서약서 운동. 발표
- 2004년 5월 13일, 25일, 31일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과 운동본부 간 실무협의 진행
- 2004년 6월 1일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수정안 제출
- 2004년 6월 3일 학교급식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 2004년 6월 11일 순학규 경기도지사 면담
- 2004년 6월 14일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자회의
- 2004년 6월 25일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자 회의 및 의장 면담
- 2004년 7월 21일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자회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의원 간담회
- 2004년 8월 19일 경기도의회 문공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면담
- 2004년 8월 24일 학교급식운동본부 연석회의
- 2004년 9월 2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염원하는 경기도민 2004선언 및 신문 광고
- 2004년 9월 3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통과.
- 2004년 9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2004년 9월 17일 경기도운동본부 대표자 회의
- 2004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급식관련 담당자 면담
- 2004년 9월 23일 외교통상부, 농림부 담당자 면담
- 20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재의 지시(WTO규정 위반)
- 2004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
- 2004년 10월 7일 행정자치부 재의지시 규탄과 경기도의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4년 10월 14일 경기도의회 만장일치 재의결
- 2004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공포 (경기도조례 제3358호)
- 2004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취소 지시
- 2004년 11월 16일 행자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2004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 취소 거부

- 2004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대법원에 제소 함.
- 2004년 12월 1일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사업 보고회 개최

[2005-2008년]

- 2005년 9월 9일 전북조례 대법원에서 패소
- 2006년 6월 27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국회)
-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 국회에서 개정 공포

- 2007년 1월 26일-27일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워크샵
- 2007년 9월 10일 국민운동본부와 경기운동본부 전체 간담회
- 2007년 10월 9일 운동본부와 경기도의회 학교급식 연구회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
- 2007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학교급식연구회와 학교급식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
- 2007년 12월 14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7년 12월 21일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경기도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급식연구회 의원 5명 대표발의와 80명 의원 서명)

- 2008년 1월 30일 안성운동본부 학교급식 관련 토론회
- 2008년 2월 13일 경기도 학교급식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회의
- 2008년 2월 20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상정
- 2008년 2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급식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
- 2008년 2월 29일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워크샵(대전)
- 2008년 3월 18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공포
- 2008년 3월 19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3월 24일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교육협력 담당자 면담
- 2008년 3월 31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4월 7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4월 14일-15일 제1회 친환경 학교급식 대회(제주)
- 2008년 4월 21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4월 28일 학교급식운동본부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연구용역팀 간담회
- 2008년 4월 30일 경기도운동본부 참가단체 워크샵
- 2008년 5월 7일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2008년 5월 13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5월 19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5월 26일 경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6월 2일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교육협력과 계장 면담
- 2008년 6월 3일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면담
- 2008년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지원센터T/F팀 회의

- 2008년 6월 10일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장, 농산유통과장 면담
- 2008년 6월 16일 경기도 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6월 23일 경기도 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6월 30일 경기도 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 2008년 7월 7일 경기도 운동본부 집행책임자 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경과]

- 2004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면담
- 2004년 7월 14일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최창의, 이재삼 교육위원외 5인)
- 2004년 9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면담
- 2004년 9월 17일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운영및관리에 관한 조례'심의
(교육위원 4명 추가 서명하여 13명 중 11인의 교육위원이 발의)
- 2004년 9월 19일-20일 교육위원회 회의 후 조례 유보 결정
- 2004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 상정하여 심의 의결
- 2004년 11월 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 의결
- 2004년 11월 20일 경기도의회 회부

[참조] 학교급식 조례 제, 개정 현황 (2008년 8월 기준)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현황 (31개 시군 166,024명 서명)

번호	시·군	청구인수(명)
1	수원시	장안구 4,300
		권선구 5,413
		팔달구 4,853
		영통구 1,403
2	성남시	수정구 1,301
		중원구 2,944
		분당구 9,329
3	부천시	원미구 3,638
		소사구 1,209
		오정구 1,104
4	고양시	덕양구 13,455
		일산구 15,040
5	안산시	상록구 6,568
		단원구 5,054
6	안양시	만안구 3,313
		동안구 6,372
7	의정부시	5,882
8	남양주시	8,212
9	광명시	3,227
10	평택시	9,200
11	용인시	9,109

번호	시·군	청구인수(명)
12	시흥시	5,037
13	구리시	3,644
14	군포시	7,169
15	하남시	1,179
16	파주시	1,139
17	안성시	5,660
18	김포시	2,731
19	광주시	730
20	오산시	1,617
21	화성시	2,499
22	이천시	4,892
23	여주군	1,507
24	과천시	1,721
25	의왕시	2,309
26	포천시	758
27	연천군	371
28	양평군	210
29	가평군	179
30	동두천시	543
31	양주군	1,203
	합 계	166,024명

■ 31개 시군 중 경기 23개 지역 제정 (표 참고)

	지역		조례제정일
1	구리시	주민발의	04. 07. 23
2	남양주시	주민발의	04. 10. 13
3	안산시	주민발의	04. 11. 18
4	안양시	주민발의	04. 10. 01
5	의왕시	주민발의	05. 12. 16
6	군포시	주민발의	04. 06. 23
7	안성시	주민발의	04. 06. 21
8	평택시	주민발의	05. 01. 12
9	광명시	주민발의	06. 05. 22
10	이천시	주민발의	04. 11. 24
11	수원시	주민발의	06. 05. 19
12	시흥시	주민발의	06. 02. 16

	지역		조례제정일
13	여주군	의원발의	04. 03. 12
14	김포시	의원발의	04. 07. 31
15	고양시	의원발의	04. 10. 04
16	성남시	의원발의	05. 03. 21
17	화성시	의원발의	05. 11. 10
18	양평군	의원발의	06. 05. 23
19	과천시	의원발의	06. 10. 09
20	용인시	의원발의	06. 10. 13
21	동두천시	의원발의	06. 11. 06
22	파주시	의원발의	07. 04. 10
23	광주시	단체장 발의	07. 10. 04

발제문1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의미와 조례실행을 위한 학교급식운동의 방향 및 과제

박 미 진

-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전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의미와 조례실행을 위한 학교급식운동의 방향 및 과제

상임집행위원장 박미진

1. 들어가며

2003년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제안하여 경기도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이다.

그 해 3월 서울 경기지역에서 학생 1,500여명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6월에는 경기인천지역 학교급식 위탁업체 비리 사건으로 인해 학교장, 행정실장, 급식업자등 28명이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분출 되었다.

2003년 10월 1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경기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 이라는 3대 원칙속에서 2004년 3월 30일 경기도민 166,024명의 서명용지를 42개의 박스에 담아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었고 수 많은 협의와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2004년 10월 20일 경기도조례 제3358호로 조례가 공포되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효력정지와 함께 조례실행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 오늘 비록 문구를 조정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통해 이제 실행하게 된 것이다.

운동을 시작할 때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하는 주민발의 조례라는 생소함과 '짧은 기간에 14만명 이상의 서명운동이 가능하겠는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두고 왜 주민발의를 하는가? 급식은 교육사무로 교육청이 할 일이지 자치단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등의 질타와 곱지 않은

시선,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운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에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와 농민회 노동조합, 정당까지 전에 없이 매우 광범위한 단체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연대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교육·홍보·조직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투쟁의 산물로 학교급식운동을 하는 동안 학교급식법 개정 6차례, 시행령 개정 3차례 이루어 내었고 부족하지만 법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해 결국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 경비 부담-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식품비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사무니, 일반사무니 하는 논쟁은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안전한 우수농산물 공급 관련 근거도 마련할 수 있었다.

국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것이 WTO규정위반이라는 엄청난 논란은 투쟁을 통해 정부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을 추진하여 다른 국가들(EU, 일본 등)이 보유한 양허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학교급식 예외 근거조항을 우리측 양허안에 규정하고 한미 FTA 협정안에도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기 반영하도록 하였다.

뒤돌아보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조례제정 운동을 하는 동안 현실적인 법 체계, 국가통상문제, 사대주의적이고 무사 안일한 일부 공무원의 방해, 지방의원들의 무관심과 행자부 눈치를 보는 자치단체장의 태도 등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아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 실행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이 토론회 자리는 지난 6년 활동을 결산하고 학교급식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가치정립, 생각과 존재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하는 개방성, 각자의 조건에 맞는 전략설정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창의성, 예산과 사업운용의 효율성을 높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합리성, 공익성 확대와 사적 이익 추구를 배제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해 본다.

II.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의미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단지 식재료 뿐 아니라 직영급식 확대,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목적과 목표에 담고 있다.

따라서 식재료와 식품비 지원 중심의 타 지역 조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G마크) 사용을 통해 우수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담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첫째, 무엇보다도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쓰자는 것이다.

안전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개선,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전통 식문화 계승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농수축산업의 육성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단가의 질 낮은 식재료,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각종 로비로 인한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었던 위탁급식은 근본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개선, 위탁업체와의 부정부패 차단을 통한 교육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책임성 강화를 통해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표 달성과 합리적 운영원칙 마련, 급식의 안전성과 질 개선, 부정부패 차단을 통한 교육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점진적인 무상급식이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점진적인 무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급식비 때문에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연간 180일 제공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들은 그나마 휴일과 방학중에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이며,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또한 예산을 이유로 신청자 전원을 지원해 주지 못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고 굶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지원 원칙과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를 제도화 하고자 하였으며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복지향상 및 공공성 확대, 교육평등과 복지로써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올바른 실행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도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무엇이었는지 당초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공유하고 그 정신을 살리고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조례개정 이후 경기 학교급식 운동의 방향 및 과제

오늘 토론회에서는 당장 조례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고민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당초 조례가 담고 있는 직영급식, 무상급식 문제는 제외하고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공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과, 납품업체와 유착고리 차단, 유통구조 혁신, 농업 농촌회생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물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중장기 로드맵 작성에 있어 검토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경기도의 결단과 운동본부 활동가들에게는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와 체계 마련

- **주민발의로 경기도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운동본부 출범 및 조례제정 서명운동 전개('03. 10. 1)
 -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청구('04. 3. 30)
 -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 심의가결·공표('04. 10. 20)
 - 행정자치부 제소 및 경기도조례 효력정지 ('04. 11. 24)
 - 경기도의회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심의가결·공표 ('08. 3. 18)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관한 시행 규칙 제정**
 - 운동본부 시행규칙과 조례 실행 관련 면담·의견서 전달 (08. 6. 3)
 - 조례 실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명시와 운동본부와의 충분한 논의 필요
 -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함.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급식법과 조례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구성가능
 - 8월 시행규칙 마련과 함께 시급히 심의위원회를 구성
 - 행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 NGO 단체 등 20명 내외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추진팀 구성**
 -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마련과 광역, 시군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 민관 공동으로 설립 추진팀 구성

- **올바른 조례실행과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 전남의 사례처럼 행정과 운동본부간의 실행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 내용과 규모 사전 협의와 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협의등

- **경기도내 31개 기초 자치단체 조례 정비**
 - 경기도내 23개 시군 조례제정과 우수농산물 공급 사업 진행
 - 친환경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진행

① 시급한 것은 시행규칙 제정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이 없더라도 경기도 조례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경기도 조례의 올바른 실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운동본부에서 이미 의견을 제출한바와 같이 당초 주민발의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로 되며, 행정의 단지 급식운동단체의 의견을 참조하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필요시 조례제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시행규칙제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 시행의 주체이자 구체적 실행기구이다. 따라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빨리 구성하여 가동시켜야 하며 위원구성에 있어 형식적인 안배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민주성, 전문성, 지속성,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는 주민발의의 산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과물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적 긴장관계,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 또한 1년에 정례회의 한 번 하거나 집행부의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닌 학교급식 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해 나가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 구체화 시켜야 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내에 실행위원회 또는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교급식사업은 단지 주무부서 공무원 한 사람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역할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타 지역 사례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학교급식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협의, 민관파트너십 구축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남의 사례처럼 실행위원회 또는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③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팀을 구성하자.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이 곤란하며 물류시스템 미비로 안전성 위협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 공급이 가능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많으나 지역산 농산물 공급 기능은 부족하다.

따라서 시행규칙 마련등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은 추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자체 논의된 바에 의하면 물류 총괄을 통한 공급, 교육, 홍보, 정책, 일상적 점검등의 통합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업체를 통한 공급체계를 개혁하고 물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팀 구성해야 한다.

④ 경기도내 31개 시군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며 기관,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03년부터 추진된 시군조례제정운동의 성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실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과 의지,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에 다른 자치단체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등에 있어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혁하거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민관협력 부족으로 인해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학부모의 능동적 참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3개 시군 조례와 아직 제정되지 않은 8개시군 조례를 제.개정하는 노력을 통해 우수, 국산, 친환경등 식재료 관련한 자치단체별 다양한 문구를 조정하여 친환경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각급기관,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 교육등 공동사업 진행과 각급 단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⑤ 경기도는 학교급식 사업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교급식사업은 단지 한 부서만이 아닌 많은 국과 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한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험은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과다로 다른 사업에 밀려 학교급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담당부서가 보호하다는 책임론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급식조례를 실행하는데 있어 경기도학교급식조례의 특성상 직영전환, 무상급식 확대, 시설설비 지원이라는 측면과 함께 중요하게는 2,041개 학교 185만명에 이르는 학생들과 보육시설에 어떻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부서에서 급식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인력보강과 함께 사업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를 통해 사업의 관장력과 논의구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서 문화관광국에서 농정국으로의 업무이관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2.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5년 로드맵 마련.

□ 단계별 학교급식 추진계획 (08년 7월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시범단계)	2010년 (활성화단계)	2011년 (정착단계)	2012년 (안정화 단계)	2013년 (전면실시)
학생수	185,876	557,628	929,380	1,394,070	1,858,759
학교수	204	612	1,020	1,530	2,041
지원비 율	10%	30%	50%	75%	100%
소요예 산	126억4천만	376억 3천만	627억 3천만	940억 9천만	1254억 6천만

* 시범 및 활성화 단계 ⇨ 문제점 도출, 피드백 분석 등 효율적인 급식모델 구축에 주력

*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학교급식을 통한 수요창출과 사회 파급으로 친환경농업육성

* 소요예산은 1식당 지원비 평균 375원, 180일로 계산 함.

사업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학부모, 생산자 단체,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하며 로드맵 안에는 학교급식 지원 분야, 지원 방식을 정하고 지원 규모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전남, 제주, 인천지역은 3-4년씩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타 광역시의 경우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금년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5단계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 시행되고 있는 시군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경기도 시범사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에는 시범사업실시를 통해 시군자체 지원사업 학교를 제외하고 시군별로 6개 학교씩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에는 전면실시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나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경기도내 학교

급식의 식재료 전면적 전환과 친환경 공급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경비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 1식당 평균 375원정도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전체학생 185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약 1,254억 정도 지출이 예상된다.

2008년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계획으로 306개 학교와 보육시설등에 3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표2 참고), 한우공급을 포함한 우수농산물 지원예산 또한 346억 정도 규모로 파악된다.(표3 참고) 따라서 기 집행되고 있는 시군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도의 체계적 사업방안이 마련된다면 합리적인 예산배분방식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시·도별 학교급식 지원경비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제주, 강원외의 경우(광역:기초=30:70) 인천, 울산, 광주의 경우(광역:기초=50:50) 부산, 대전, 대구의 경우 광역이 100% 부담하며 경북의 경우(광역:기초:교육청=13:35:50)로 분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시군 재정 규모에 따른 차등보조 방안등을 감안해 경기도의 지원경비 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초기 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시범 사업의 경우 100% 경기도가 재원을 부담하고 본격 시행할시 분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표 1> 경기도 학교급식 현황 (08년 7월 현재)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1,093	1,093	100%	930,044	901,801	97%	1,093(100)	0(0)
중학교	544	544	100%	487,405	485,784	99.7%	491(90.3)	53(9.7)
고등학교	380	380	100%	438,008	424,704	97%	230(60.5)	150(39.5)
특수학교	24	23	95.8%	3,302	3,255	98.6%	20(87)	3(13)
계	2,041	2,040	99.9%	1,858,759	1,815,544	98.6%	1,834(89.9)	206(10.1)

<참고-표 2> 08년 시·도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계획

시·도	예산				지원 물량	지원대상					
	계	시도 비	시군구 비	자부담 등		계	보육 시설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기타 (대학등)
합계	백만원 120,652	22,432	56,172	42,048	톤 36,748	개소 6,991	2,897	2,629	953	456	56
서울	644		644			330	328	2			
부산	740	740				31		31			
대구	847	317	530		167	41		35	6		
인천	6,101	1,999	2,167	1,935	2,532	456	185	156	75	32	8
광주	965	483	482			38	-	16	12	5	5
대전	1,882	941	941			68	-	65	1	-	2
울산	684	336	336	12	209	42	-	36	4	2	
경기	3,608	-	3,357	251	1,544	306	35	216	32	21	2
강원	1,249	257	837	155	252	214	77	93	24	20	
충북	2,779	-	2,779	-	1,194	343	94	186	43	19	1
충남	6,567	1,752	4,494	321	2,459	569	190	220	92	64	3
전북	6,261	2,092	3,679	490	2,676	997	347	468	138	38	6
전남	51,779	9,804	23,591	18,384	12,782	2,388	1,523	456	253	150	6
경북	3,162	461	1,820	881	1,098	329	40	177	91	20	1
경남	29,634		10,515	19,119	9,735	614	-	375	150	69	20
제주	3,750	3,250		500	2,100	225	78	97	32	16	2

<참고-표 3> 2008년도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

시도	지원학교수				지원예산(백만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4,390	1,692	686	6,768	73,970	28,211	21,072	123,253
서울	-	-	-	-	-	-	-	-
부산	44	3	3	50	1,071	237	311	1,619
대구	35	6	-	41	610	237	-	847
인천	174	56	32	262	3,285	1,490	885	5,660
광주	16	12	10	38	453	336	175	964
대전	116	1	-	117	2,226	3	-	2,229
울산	36	4	2	42	501	78	2	581
경기	1,454	512	176	2,142	25,166	6,022	3,415	34,603
강원	155	41	21	217	964	365	303	1,632
충북	82	41	19	142	495	282	340	1,117
충남	430	191	116	737	5,384	3,050	3,200	11,634
전북	426	128	60	614	7,380	3,285	3,374	14,039
전남	453	250	153	856	13,591	7,205	6,932	27,728
경북	499	283	-	782	3,465	1,765	-	5,230
경남	373	132	78	583	7,497	2,806	1,309	11,612
제주	97	32	16	145	1,882	1,050	826	3,758

<참고 3> 경기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제정 상황(08년 3월말 기준)

남양주시('04.10), 안산시('04.11), 화성시('05.11), 광주시('07.10),
안성시('04.6), 양평군('06.5), 동두천시('06.11) - 7곳

3. 경기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주체 마련.

조례 제·개정 운동은 실천과 투쟁이 수반되지만 비교적 간단명료한 측면이 있는 반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성과 지속성이며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는 운동이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관련 기구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일할 활동가 확보가 필요하며 건강한 먹을 거리 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농민, 환경, 여성, 인권, 문화, 노동운동의 연대의 고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운동의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부모를 교육하고 조직해야 한다.

때문에 경기도운동본부를 제정비하고 주요부문조직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 활동가까지 학교급식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운동의 주체를 책임지고 마련하자.

IV. 마무리

학교급식운동은 단순한 먹거리 운동이 아니라 교육개혁, 우리농업을 지키는 운동,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이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자 한다. 조례제정이 1단계 운동이었다면 경기도조례가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2단계 운동이며 새로운 출발점이다.

특히나 먹거리의 중요성과 안전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운동본부 활동가등 학교급식 관련자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과정과 서로간의 책임과 역할배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은 경기도, 행정의 의지와 결단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이 없는 쇠고기, GMO 없는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바라면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발제문2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경기도의 현황과 과제

김 용 연

· 경기도 교육협력과장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경기도의 현황과 과제

경기도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머 리 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반대 및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요즈음,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올바른 학교급식지원 실행을 위한 경기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론

①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현황

'04. 9. 10 주민발의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발의되고 '04. 9. 24 행정자치부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국내산 농축산물로 한정하는 것은 WTO협정상 내국민대우(GATT제3조)규정에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04. 10. 20 제정·공포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04. 11. 24 조례안제의결무효확인청구 소 및 조례집행정지결정신청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08. 3. 18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의원발의로 개정·공포되었다.

② 경기도의 현황과 과제

○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 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 시행규칙안 제정 절차는 타시도 조례 분석, 초안 작성, 관련부서 협의, 제정안 법제부서 심사, 규칙제정안 공개 및 의견수렴, 입법 예고문 사전심사, 도보 및 인터넷을 통한 공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위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8조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당연직 7명이내, 위촉직 13명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은 도의회, 학부모단체, 농어업인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자 한다.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급식경비 지원규모와 내역,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재정

적 지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지원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 할 계획이다.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 학교급식법 제3조에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은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교육청의 학교급식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되,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다.

○ 학교급식지원 재정적 부담

• 경기도는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11,000명에게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연간 4,75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 식자재 구입 지원에 따른 경비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도, 시·군간의 적절한 경비 분담비율이 검토되어야 하고 향후 재원 부담에 대한 정책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공급에 따른 지원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군수가 지역실정과 학교급식수요를 종합적

으로 감안 적절히 판단하여 설치·운영할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설립시 몇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 학교급식은 학기중 연간 180식에 불과하고 방학 등에는 공급이 중단되므로 학교급식 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돼 있고,

- 통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 우수 농산물의 검증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의 농정시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도 관련부서 및 도교육청, 시·군간 협력관계 구축

•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 공급, 식중독 등 위생관리, 학교급식경비지원 등 도의 관련부서 및 도교육청, 시·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맺 음 말

본론에서 제시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과제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합시다.

발제문3

광역통합급식체계 구축을 통한
경기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이진찬

·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 광역통합급식체계 구축을 통한 -
경기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이진찬

1. 머리말

우리나라 6.25 동란이후 국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1953년 전쟁으로 인한 빈곤한 아동들에게 구호급식을 위한 세계자선기구인 국제아동기금(UNICEF) 등이 지원하는 곡류와 식품 등으로 그 당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 학교급식의 시작이 되었다.

그 이후 구호급식이 중단된 후 우리나라 학교급식제도는 1970년대 후반에 학교급식 확대가 이루어져 1980년대에 60% 이상의 초급학교 학생이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식사와 식사예절, 식사와 관련된 우리 식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1954년부터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의 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이 1981년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그 공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놓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의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취식함으로써 2006년 6월의(46개교의 위탁급식학교에서 3,613명이 식중독 발생) 대형식중독 사고처럼 급식의 위생문제 등에 의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경기도는 1,100만의 인구와 180만명의 학생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자치단체이다. 경기도에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조례를 2004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학교급식 관련하여 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시스템 마련을 위

한 노력은 없었다. 많은 학생수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고 있고 농촌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역 우수농산물의 생산·소비 연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학교급식 질적 향상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부모 일 것이다.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어 지역농업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고 지역교육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조금 위주의 학교급식 질 향상을 바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학교급식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학교급식 현황

현재 학교급식의 운영은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직영, 위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직영급식이 88%(1,717개교), 위탁 급식이 12%(232개교)가 되고 있다. 대체로 2006년 Noro Virus 식중독 사건 이후 직영급식을 권장하고 있어 직영급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직영급식이 위탁급식에 비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학교급식 시스템에서는 식재료의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르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양질의 식재료를 싸게 구입하고자하는 취지가 왜곡되면 저급 식재료의 납품이 우려되고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약해서 덤핑, 담합입찰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생식품류 가격변동요인 발생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손실보전을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저급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생식품의 특성상 계절별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의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금액낙찰제에 의한 학교급식 계약은 공급업체에게 계속거래의 보장이 없어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낮은 급식단가는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

다. 식재료 가격 조사시 영양사들의 식재료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시점의 거래 가격이 급식 단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특히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동종품목의 가격조차도 다양하게 거래되는데 비현실적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아 단가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조사 가격이라도매시장 가격으로 조사되어 물류비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급식단가 증가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또한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학교의 책임하에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개별 학교별로 소량의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공급업체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도내 일부학교 등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 구매 실시를 통해 낮은 가격에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아직 미진한 단계에 있다.

개별학교별 식단 편성으로 단기간 사용물량 발주로 납기 기일이 짧아 안전성 관리가 부족하며 사전계획 생산을 통한 지역농산물 납품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해 공동식단을 개발하고 사전식단 확정으로 사전 발주로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농산물과의 계약재배로 우수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재의 학교급식 시스템에서 현재 경기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학교급식재료 검사 및 소시모 등의 농산물안전성 조사 강화 등 식재료 안전성에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 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에 성남시 등 22개 시·군에서 15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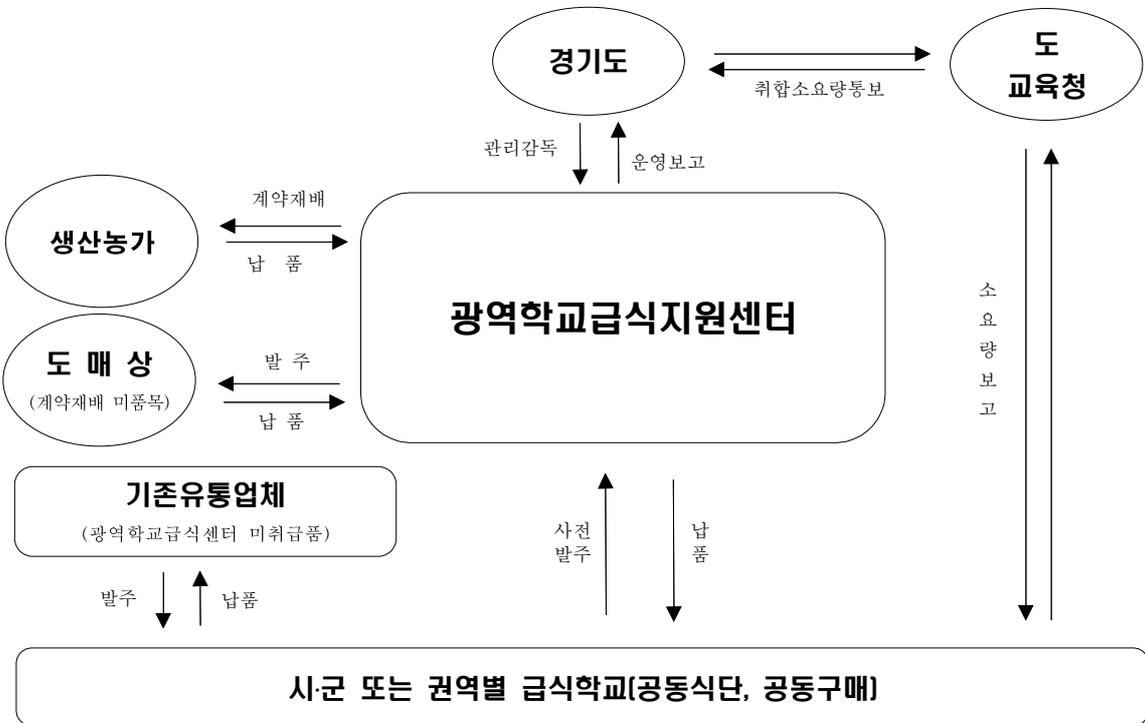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행자부에 제소되어 있던 학교급식조례를 재개정하여 공포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준비 중으로 이에 발맞춰 통합학교급식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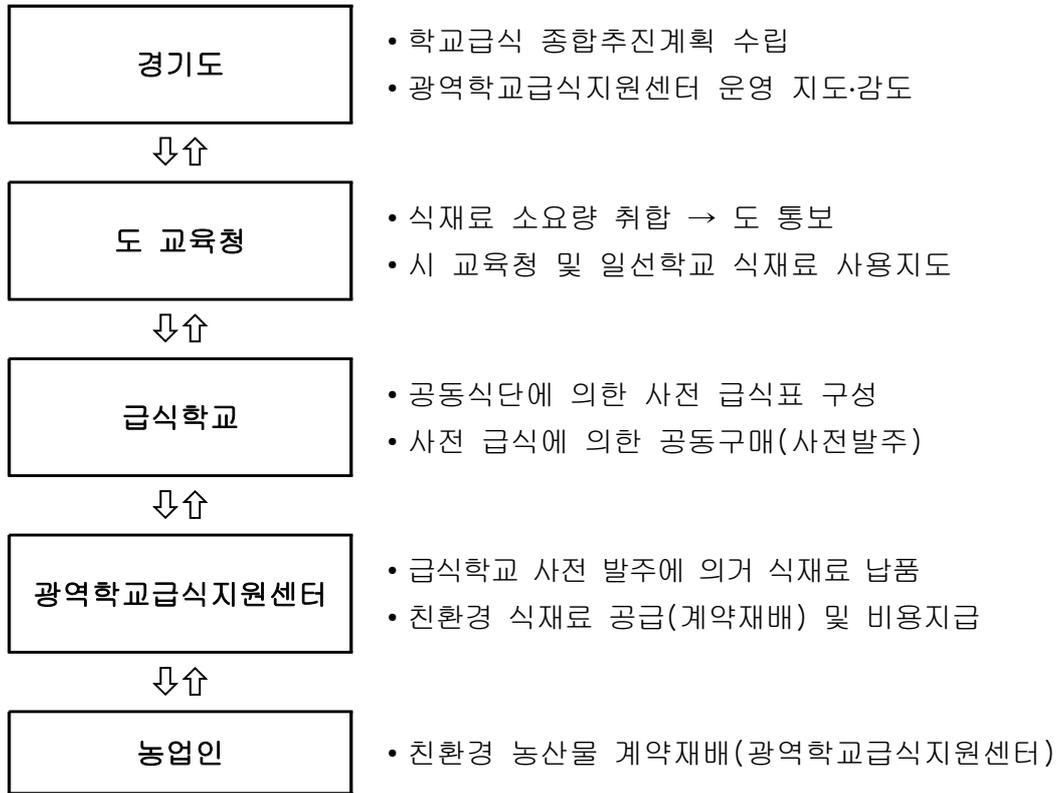
3. 통합학교급식체계구축

□ 통합학교급식체계의 개념

통합학교급식체계는 현재 개별학교 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시·군 또는 소권역별로 표준식단을 통해 사전에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식단을 편성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에 사전 발주를 통해 공동구매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전 발주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이다.

【통합학교급식체계 구성(안)】





□ 통합학교급식체계의 기대효과

통합학교급식체계가 구축되면

첫째 공동식단을 통한 사전 식단 편성으로 식재료 사전 발주에 따라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공동구매로 대량 구입하여 식재료 단가 인하로 기존의 급식비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 구입 가능하게 된다.

둘째 사전식단 편성 및 식재료 사전발주로 영양사의 식재료 구매 등의 업무 감소로 본연의 업무인 영양 및 급식관리 업무 전담하게 되어 급식 수준이 향상되고 아이들에 대한 급식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입으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의 대형소비처 확보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 통합급식체계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통합학교급식체계구축으로 전체품목 공급시 정부독점이 되어 식재료 시장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지배하게 되고, 경쟁자 없이 행하는 독과점사업으로 이행되어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위배되고,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저항과 반발 우려된다.

⇒ 이에 따라 행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 NGO단체 등 학교급식 관련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의 물류기지 역할이 중요하기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내에 위치하여야 하나 기 추진중인 친환경물류센터 설립여부가 불투명하다.

⇒ 중앙부처 지원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립이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중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기중 평일의 점심식사를 원칙으로 운영되어 연간 180식에 불과하고 방학 등에는 공급이 중단되므로 학교급식만을 위한 급식지원센터는 비효율적이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전담하되 그 외 병원, 기업체 등 대형업체에 대한 급식 추진하여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화함에 따라 경기도의 넓은 면적과 많은 학교로 인해 배송체계가 복잡해지고 특히 당일배송, 당일조리 원칙에서는 식재료 배송에 많은 노력 필요하게 된다.

⇒ 따라서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거점 물류기지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학교급식시설을 개선 식재료 보관 기능을 강화하여 물류량 경감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자가지역 농산물의 사용을 강화하는 추세로 광역통합급식체계 구축시 시·군간 갈등 발생 여지가 있으며,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지원 근거가 약해지게 된다.

⇒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입시 기 지원하고 있는 시·군비 보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시·군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0년 초반까지 양적 팽창을 통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내부적으

로는 안전성, 급식비, 질적 향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식문화, 농업,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역통합급식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농업·농촌의 활성화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자, 학부모, NGO단체 등각계의 많은 분들과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최근 광우병으로 불거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제문4

학교급식 식재료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과 과제

이 경 익

· 경기도교육청 급식담당사무관

학교급식 식재료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과 과제

경기도교육청

1. 학교급식의 목적

- 학교급식은 따뜻하며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 기틀 마련
-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2. 학교급식 현황('08. 7월 기준)

- 급식 학교수 : 전체학교(2,041개교)의 99.9%인 2,040교에서 급식실시
- 급식 형태별 : 직영급식 89.9%(1,834개교), 위탁급식 10.1%(206개교)
- 급식 학생수 : 전체학생의 98.6%인 1,815,544명(교당 평균 890명)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1,093	1,093	100	930,044	901,801	97	1,093(100)	0(0)
중 학교	544	544	100	487,405	485,784	99.7	491(90.3)	53(9.7)
고등학교	380	380	100	438,008	424,704	97	230(60.5)	150(39.5)
특수학교	24	23	95.8	3,302	3,255	98.6	20(87)	3(13)
계	2,041	2,040	99.9	1,858,759	1,815,544	98.6	1,834(89.9)	206(10.1)

* 위탁급식의 유형 : 교내운영위탁 195개교(9.6%), 외부운반위탁 11개교(0.5%)

3. 급식관련 예산

○ 2007년도 예산

- 급식경비 : 연간 1조 800억원 규모('06년 8,298억원, 30.2% 증가)
- 재원부담 : 교육재정 23.9%(2,584억원), 학부모가 71.9%(7,762억원) 등
- 집행내역 : 식재료비 61.8%(6,677억원), 인건비 20.2%(2,183억원) 등

재원부담 주 체 별	교육청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기타 등	계
	2,584억원 (23.9%)	454억원 (4.2%)	7,762억원 (71.9%)	0억원 (0%)	10,800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1,197억원 (11.1%)	2,183억원 (20.2%)	6,677억원 (61.8%)	743억원 (6.9%)	10,800억원 (100%)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급식경비 (식품비,운영비등)	인건비	시설개선 비	저소득층 급식비		계
				학기중	토공휴일	
초	31,837,054	51,323,771	26,062,541	13,389,948	5,377,190	122,613,314
중	0	12,655,260	11,028,828	15,095,808		38,779,896
고	0	6,825,855	31,679,716	18,397,584		56,903,155
특수	1,552,040	0	53,600	0		1,605,640
계	33,389,094	70,804,886	68,824,685	46,883,340	5,377,190	225,279,195

※ 인건비에는 정규직 인건비 제외

- 2008년도 학교급별 급식단가 현황

[단위 : 원]

구분	급식비 단가(1인 1식당)				학부모 부담	교육청 등 지원	비고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계			
초등학교	1,367	254	329	1,950	1,598	352	
중 학교	1,740	278	502	2,520	2,512	8	
고등학교	1,734	324	512	2,570	2,570		
특수학교	1,900	300	0	2,200	0	2,200	

※ 교육청지원액에서 인건비지원액은 제외

-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현황

구 분		식품비 및 운영비 1인 1식당(원)	인건비	비고
초등학교	도서벽지	1,100	-영양(교)사 1명 -조리사 및 조리원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1명 ~ 7명)	
	농어촌지역	800		
	소규모도시 (300명이하)	450		
	도시형	50		
중 학교	직영	0	-영양(교)사 1명 -조리사 1명	
고등학교	직영	0	-영양(교)사 1명 -조리사 1명	
특수학교	급식학교	2,200	-영양(교)사 1명 -조리사 및 조리원 전체	

○ 자치단체 급식비 지원 현황

-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현황
경기도 및 27개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 자치단체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별	지원 학교수	지원액	지원내용
2007년	1,324교 (초 923교, 중 318교, 고 83교)	13,570,694	-지역쌀 또는 친환경쌀 사 용에 따른 차액분 지원
2008년	1,707교 (초 1,181교, 중 388교, 고 138교)	22,825,370	-우수농축수산물(친환경농 산물) 사용 차액분 지원 -우수축산물 지원사업

4.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 식재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
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부터 구매('08.3.14.시행)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
칙 제4조)
-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이력추적표시제품,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구매 권장 및 홍보
 - 경기도 「G 마크」 1등급이상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
원 754교
- ※ 학교별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조달방법, 업
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
문) 사항임
- 급식관련 계약정보 공개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
정

-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 적용
 - 인근 학교간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07년 6팀 16교 참여)
-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과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검수 시 학부모 또는 교직원 참여하에 복수검수를 통해 원산지과 품질확인 철저
 - 쇠고기 등의 식재료 구입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산 또는 수입산(원산지) 사용여부 결정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및 공개
 - 부정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검수시스템 운영
- 연 2회 이상 부적격 식재료 납품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제재

5. 학교급식 식재료 개선을 위한 방안

-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식재료 공급센터」 설립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2004.10.20 조례 제3358호

개정 2008. 3.17 조례 제37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인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제2조(목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개정 2008.3.17>
2.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여성부관할하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3.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

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08.3.1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방안 <개정 2008.3.17>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방안
 3. 경기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방안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조례」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교육청을 통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②도지사와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기간,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을 넘어야 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경기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3.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의결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과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는 지원금을 지원금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내역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3.17]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08.3.17]

제11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사항의 공개)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7>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급식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경비의 지원, 결과의 보고, 지도·감독,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보육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7>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